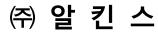


# 노동 및 인권정책

(Labor and Human Rights Policy)

제정 2023. 11. 20



# 노동 및 인권정책

#### 제 1 장 총칙

#### 제 1 조[목적]

ESG 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나타내는 용어로, ㈜알킨스(이하'회사'라고 함)가 지속 가능하게 경영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투명하게 운영되기 위한 핵심 원칙을 나타낸다. ESG 조직 경영위원회 위원장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 측면에서 회사의 전략 및 정책을 검토하고 ESG 성과 측정 지표의 설정과 모니터링 방법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회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적용범위】

이 정책은 회사의 모든 부서뿐만 아니라, 생산, 판매, 공급망 등 모든 사업 단계에서 적용된다. 이로써 회사의 모든 활동과 연관된 모든 인원이 이 정책을 준수하도록 보장한다.

#### 제 3 조 [용어 정의]

- 이 정책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인권: 모든 개인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기본적이고 불가침의 권리로서, 차별, 폭력, 억압으로 부터 보호받아야 함을 말한다.
- 2. 차별: 인종, 성별, 종교, 국적, 나이, 장애 등에 기반한 불공평한 대우를 말한다.
- 3. 근로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4. 이해관계자: 회사의 경영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협력업체, 거래처, 고객, 주민, 구성원 등의 법인과 개인을 포함한다.

# 제 2 장 책임 및 권한

#### 제 4 조 [인권 책임담당자]

인권 책임담당자는 ESG 조직 경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며, 회사 내에서 인권 문제에 대한 주요 책임을 지며, 인권 이슈의 조사, 조치 및 개선을 총괄한다.

#### 제 5 조 [각 부서 책임자]

- 1. 각 부서 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리더로 지정되며, 부서 내에서 발생한 인권 이슈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또한, 부서 내에서 인권 교육 및 의식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교육 및 활동을 계획하고 이행해야 한다.
- 2. 각 부서는 자체적으로 인권경영 정책을 시행하고 준수하며, 부서 내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해결책임을 져야 한다.
- 3. 각 부서 책임자는 해당 부서 내에서 인권 이슈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고한다.

## 제 3 장 인권경영 방침

#### 제 6조[인권경영방침]

- 1. 직원의 인권을 존중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한다.
- 2. 이해관계자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추진한다.
- 3.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 생산, 판매와 같은 모든 사업 단계에서 인권을 고려한다.
- 4.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지역 사회의 인권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인권 존중 가치 실현한다.

#### 제 7 조【세부지침 내용】

1. 인도적 대우

회사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실현을 위해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비인도적 대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 1) 모든 근로자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정신적 또는 육체적인 강압, 학대, 협박 등 불합리한 대우를 금지한다.
- 2) 임직원의 인격권, 건강권 및 휴식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한다.
- 3) 직장 내 언어적 · 신체적 폭력, 괴롭힘, 성희롱 등의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징계 및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한다.

#### 2. 강제 노동 금지

회사는 노동에 대한 근로자의 자유의사를 존중하며 강제 노동을 금지한다.

1) 근로자의 자유의사를 존중하며 강제 노동과 인신매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 3. 아동노동 금지

회사는 연소자 근로에 대한 관련 정책을 준수하며, 미성년자 근로 시 법규에 따른 적절한 절차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법규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1) 회사는 15세 미만의 아동 고용을 금지하며, 15세 이상 18세 미만 연소자의 경우에는 적절한 교육권을 보장하고 안전이나 건강을 위협하는 업무에 투입하지 않는다.

#### 4. 차별금지

회사는 모든 근로자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인종, 성별, 성적 정체성, 종교, 국적, 나이, 장애 등에 기반한 차별을 엄격히 금지한다.

- 1) 회사는 성별, 인종, 나이, 성 정체성, 학력, 장애, 종교, 정치 성향, 사회적 신분 등의 사유로 채용, 임금, 승진 등 인사 프로세스상에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2) 채용, 승진, 훈련, 보상 등의 모든 과정에서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며, 모든 근로자가 존중받고 포용 되는 환경을 조성한다.
- 3) 어떠한 차별 행위도 허용되지 않으며, 차별에 대한 신고는 신속하게 조사하고 처리한다.

#### 5. 근로시간 준수

회사는 정규, 초과근로, 휴일 근무 등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며, 근로시간을 적절히 관리하여 위법 상황을 방지한다.

- 1) 주 5일 기준으로 하루 8시간, 주당 40시간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 2)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로 간주하며, 추가 근로자에게 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해야 하며, 휴일 근무를 또한 해당 기준에 맞는 보상을 해야 한다.

#### 6. 결사의 자유 보장

회사는 노사 간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건전한 조직 발전을 도모한다.

- 1) 해당 지역의 노동관계 법규에 따라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 2) 결사의 자유를 행사하는 노동자들은 어떠한 형태의 압박이나 감시에서도 자유로워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 7. 개인정보보호

회사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해당 지역의 법규에 따라 고객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 1) 제품이나 서비스의 제공 시, 고객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안전, 생명, 건강, 재산 등의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 2)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인정보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고객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 8. 지역 사회 참여

회사는 사업장 인근 지역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을 파악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사회의 의견을 경청하며,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 노력한다.

- 1) 지역 고령자나 장애인을 도와주는 봉사활동, 어린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적 봉사 등을 통해 지역 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2) 지역 기업들을 지원하여 지역 경제의 안정성을 증진하고, 지역 사회에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이바지한다.

#### 9.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

회사는 모든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안전 정책을 준수하고 모든 작업 환경에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해 위험을 최소화한다.

- 1) 근로자들의 안전 보호구 사용 및 안전사고 발생률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 2) 근로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해 스트레스 관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행한다.

#### 10. 공급망 책임

회사는 자사의 공급망에서도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고, 파트너사와 공급업체에 우리의 인권 원칙을 전달하고, 그들도 같은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한다.

- 1) 정기적인 검증 및 감독을 통해 공급망에서 인권 준수 여부를 평가하고, 발견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2) 모든 공급망 파트너사들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인권 침해 예방에 이바지한다.

#### 11. 비인도적 대우 예방 프로그램 구축

회사는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비인도적 대우 예방 프로그램을 구축한다.

- 1) 정기적인 교육과 의식 확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원들에게 비인도적 행동이 회사의 가치와 정책에 어긋나는 것임을 인식시킨다.
- 2) 팀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팀 빌딩 활동을 주선하며, 참여를 촉진한다.
- 3) 갈등 상황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갈등 해결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12. 비인도적 행동 신고제도

- 1) 회사는 다양한 신고 채널을 통해 비인도적 행동에 대한 신고를 받고, 익명신고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운용하며,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 (1) 홈페이지: http://www.alkyn.com/main\_kr/
  - (2) 인터넷 제보: seongjin.min@alkyn.com
  - (3) 유선 제보: 전화 031-683-8124 (내선 1004번) / 팩스: 031-683-8137
  - (4) 서신접수: (17794)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청북중앙로 578-19 ㈜ 알킨스 윤리경영위원회
  - (5) QR 익명신고: 각 사무실과 식당, 출퇴근 기록기 등 부착

#### 13. 비인도적 행동에 대한 제재 및 지원

회사는 비인도적 행동이 발생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제공한다.

- 1) 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히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때 조사 및 제재 프로세스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한다.
- 2) 피해자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3) 비인도적 행동에 가담한 직원에 대해서는 교육 및 재발 방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제 4 장 목표 설정 및 성과평가

#### 제 8 조 【목표 설정】

- 1. 근로자 참여 증진
  - 1) 의견 수렴 플랫폼 개설 및 근로자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 조직문화에 반영한다.
  - 2) 근로자들의 의견 참여율을 기존 38%에서 25년 50%, 28년까지 70%로 증가시킨다.
  - 3) 정기적으로 의견이 실제로 조직문화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정량적으로 확인한다.
- 2. 근로시간 준수
  - 1)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자동화 시스템으로 철저히 기록하고, 초과 근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한다..
  - 2)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는 비율을 연간 95%로 설정한다.
  - 3) 근로시간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근로시간 단축 효과를 확인한다.
  - 4) 연차소진 촉진제 50% 사용을 목표로 한다.
- 3. 차별금지와 다양성
  - 1) 차별금지 정책을 강화하고 성별, 인종, 성적, 정체성 등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한다.
  - 2) 성별, 인종, 장애에 기반한 채용 및 승진에서의 차별 사례를 제로화한다.
  - 3) 채용 및 승진에서 다양성을 반영한 비율의 증가, 근로자들의 차별에 대한 인식 조사결과를 통해 차별 사례 발생에 대해 확인한다.

#### 제 9 조 [성과평가]

노동 및 인권정책 성과는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평가 지표를 적용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성과지표 관리 방안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주기: 매년 말 또는 사업연도 종료 시점에 성과평가 실시한다.
- 2. 보고: 성과평가 결과는 지속 가능성 보고서 및 기업 웹사이트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보고한다.

# 부 칙

## 제 1 조【【시행일】

1. 이 정책은 2023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제 2 조 [정책의 변경과 보완]

1. 정책의 내용에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서 변경 및 보완할 수 있다.